

[별표 9]<신설 1994.12.31, 1995.12.30, 1996.12.31>

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

(제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관련)

구 분	지 역
1. 과밀억제권역	가. 서울특별시 나. 인천광역시(강화군·옹진군·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한다) 다. 의정부시·구리시·남양주시(호평동·평내동·금곡동·양정동·지금동·도농동에 한한다)·하남시·고양시·수원시·성남시·안양시·부천시·광명시·과천시·의왕시·군포시·시흥시(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)
2. 성장관리권역	가. 남양주시(와부읍·진접읍·별내면·퇴계원면·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) 나. 양주군(주내면·백석면·장흥면에 한한다) 다. 포천군(소흘읍에 한한다)

<비고>

1. 제1호의 지역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은 제외한다.